

국회에서 의결된 商法施行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이명박 ㉠

2010년 7월 23일

국무총리 정운찬

국무위원 이귀남

법무부장관

●**법률 제10372호**

商法施行法 일부개정법률

商法施行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商法施行法”을 “상법시행법”으로 한다.

제54조제2항 중 “會社整理法”을 “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55조제2항 중 “破産法”을 “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부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**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현재 「회사정리법」과 「파산법」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 7428호. 2005. 3. 31. 공포, 2006. 4. 1. 시행)되면서 모두 폐지된 상태이나, 현행법 제54조제2항과 제55조제2항에서 여전히 폐지된 법률의 제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.

따라서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제명을 현행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여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이명박 ㉠

2010년 7월 23일

국무총리 정운찬

국무위원 이귀남

법무부장관

●**법률 제10373호**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

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·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·준비서면,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부칙

- 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적용례)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송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 주소·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나, 그 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명하는 사유를 확대하고,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이 명 박 인

2010년 7월 23일

국 무 총 리 정 운 찬

국 무 위 원 이 귀 남
법무부장관

●법률 제10374호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1항 중 “교육 지원”을 “교육 지원, 의료 지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의 자녀에게 교육 및 보육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나 의료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실정이므로,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다문화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결혼이민자의 자녀에게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